

TERMS AND CONDITIONS OF SALE AND SUPPLY (약관) BRÜEL & KJÆR SOUND & VIBRATION MEASUREMENT A/S

1. 해석

1.1 판매와 공급에 관한 본 규정들과 조건들을 해석함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조건”):

“매수인”이란 어떠한 주문이나 제안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주문하는 사람, 회사 또는 기업을 말한다.

“조건”이라 함은 공급자에 의하여 때때로 변경될 수 있는 판매와 공급에 관한 본 규정들과 조건들을 말한다.

“계약”이라 함은 매수인이 공급자의 제품을 매수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주문을 제출하고 공급자가 서면으로 이를 수락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합의를 말한다. 서비스의 경우에 있어서는 앞에서 명시한 당사자들이 제안서를 통하여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 그러한 계약은 본 규정들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제품”이라 함은 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매수인에게 공급하기로 약속한 물품을 의미하며, 적용 가능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도 이에 포함된다.

“제안서”라 함은 공급자가 매수인에게 제공할 서비스를 설명하는 문서로서, 양 당사자가 서명을 하고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문서를 의미한다.

“서비스”라 함은 계약에 따라 공급자가 매수인에게 또는 매수인을 위하여 제공하기로 한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말하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제안서에 설명이 되어 있다.

“공급자”는 Brüel & Kjær div. of Spectris Korea Ltd.와 모든 견적과 제안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계열사들이다.

2. 판매의 기초

본 조항들은 매수인의 주문서, 또는 주문서에 첨부된 문서에서 나타나는 조항이나 조건들에 항상 우선한다. 매수인의 주문서에 나타나는 조건이나 조항들 중 본 조항들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규정된 바와 다른 것이 있으면, 그러한 조항이나 조건들은 공급자가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수락하지 않는 이상 계약의 내용을 이루지 못한다. 매수인이 공급자가 공급한 제품이나 제품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 받은 사실, 또는 이에 관한 송장에 따라 대금을 지불한 사실은 본

조항들의 적용을 받기로 한 의사표시로 본다. 공급자가 매수인의 의사표시에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본 규정들의 적용을 받기를 포기했다거나 그러한 매수인의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견적:

견적에서 언급하는 가격, 설명, 그리고 배달 날짜는 단순한 정보로서의 기능만 가지며, 공급자가 매수인의 주문을 받아들이고 모든 기술적인 사항들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공급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공급자에 대해 60 일 이내에 주문을 하지 않으면 실효한다.

4. 주문:

매수인은 공급자에게 주문서를 제출함으로써 본 규정들 전부의 적용을 받을 것에 동의하는 것이다. 모든 주문은 가격, 물량 그리고 상호 합의한 송부 날짜를 명시하여야 하고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할 약속들이다. 공급자의 견적에 대한 답으로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주문서도 공급자가 서면으로 이를 수락하기 전까지는 공급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5. 가격과 세금:

제품의 가격은 공급자가 매수인에게 통보한 가격이며, 서비스의 요금은 제안서에서 합의된 요금이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우 모두에 양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다른 가격에 합의할 수 있다. 가격이나 요금에는 세금, 운송비, 보험, 수입/수출 관세 또는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될 수 있는 한정 판매, 부가세, 사용 또는 소비세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공급자의 재량에 따라 상품가격과 서비스 용역료에 포함시키거나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세금과 비용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은 이상 매수인은 공급자가 배송, 포장, 보험, 그리고 수입 또는 수출 허가를 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6. 발송과 배달:

6.1 공급자는 매수인의 주소 또는 당사자들에 의해 합의된 다른 배달 장소로 제품을 관세미지급 반입 인도조건 (DDU Incoterms 2000) (수입 절차 완료) 상태로 배달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인용한

모든 배달 날짜는 대략적인 것일 뿐이며 배송의 지연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공급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배달의 시간은 핵심적인 내용이 되지 않는다.

6.2공급자는 제품을 분할하여 배달할 권리를 보유하고, 분할하여 배달을 이행한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개별적인 송장을 발부할 수 있다. 배달이 분할되어 이루어져야 하거나 공급자가 분할하여 배달을 할 권리를 행사한 경우, 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우에 분할하여 배달되었어야 할 분량의 배달이 어떠한 이유로 지체되었을 경우에도 매수인은 계약 전체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7. 위험부담과 소유권의 이전:

제품에 대한 소유권과 제품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위험 부담은 제 6 조에 규정된 배달의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제품의 훼손, 멸실, 또는 잘못된 배달에 관한 청구는 운반인 에 대하여 접수되어야 하며 배달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공급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10 일 이내에 공급자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가 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품을 최종적으로 검사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제품의 수령은 공급자가 제 11 조의 내용 외에 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8. 서비스:

8.1공급자는 본 규정과 관련 제안서의 조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8.2매수인은 공급자의 합당한 요구에 따라, 또는 달리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공급자에게 그가 관련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제공된 정보와 자료의 완전성과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이 지게 되고, 이러한 정보나 자료를 계속하여 공급자가 서비스 제공을 함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9. 결제의 조건:

9.1제품의 송부는 각각 따로 하나의 거래를 구성할 것이고 매수인은 배달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송장을 받게 될 것이다. 서비스에 관하여는 공급자가 매월 미리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금 지급의 기한은 송장이 발부된 날짜 이후 30 일이다.

9.2계약에 따라 청구되는 모든 금액은 매수인이 어떠한 공제, 보류, 상쇄 또는 상계의 청구 없이 지불하여야 하며, 이러한 공제, 보류, 상쇄 또는 삭감의 사정은 그것이 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것이 아닌 이상 계약에서 비롯된 것이든,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든, 법정 의무에 위반한 것이든 상관 없다.

9.3공급자는 독자적인 재량권의 행사로서 어떤 한 시점에 매수인의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담보의 의미로서 매수인이

공급자에게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9.4만일 매수인이 변제기에 대금의 결제를 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그에게 허락되는 다른 권한과 대처 방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다음 중의 하나의 행위를 골라서) (i)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보고 제품의 추가적인 송달을 지연 또는 취소하고 그 계약 또는 다른 어떠한 계약에 따른 서비스의 추가적인 제공을 취소하며 상당한 취소 수수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ii) 계약을 승인하고 매수인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거나, (iii) 대금의 결제에 더하여 결제되지 않은 대금에 대하여 시중은행 정기예금의 이자보다 4% 인상된 이자(판결이 내려지기 전과 후에 모두)를 대금의 결제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이자는 매일 산정되어야 한다.

10. 제품:

10.1공급자는 제품의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품의 사항에 대하여 수정을 가할 수 있다. 또한 공급자는 정부 당국에 의하여 설정된 규정이나 우선권이 있는 사항에 의하여, 또는 특정 물질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습득이 불가능한 물질을 대신할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10.2공급자의 카탈로그, 팸플릿, 가격표, 광고자료, 판매 자료 또는 문헌에서 제공되는 제품의 설명이나 그림 등은 대강의 설명이고 대략적인 내용일 뿐이며, 매수인에게 대략적인 정보나 지침을 제공할 뿐이다. 이러한 정보는 공급자에 의한 보증 또는 representations 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계약의 일부가 되지도 않는다.

11. 보증:

11.1공급자는 제품이 매수인에게 배달된 날로부터 1 년 동안은 재료나 가공상의 문제가 없을 것을 보증하나, 제품의 운영(제 13 조에서 규정)이 방해 받거나 오류가 없을 것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모든 제품 오류들이 수정될 것이라고 보증하지도 않는다.

매수인이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과, 그러한 사용법이 법률에 따르는 사용법이라는 것에 관하여는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

11.2공급자는 제안서에 따른 서비스를 합당한 주의와 능력을 기울여 수행할 것을 보증한다.

11.3매수인이 공급자에게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즉시 서면으로서 주장하고, 그러한 제품이 매수인의 위험부담으로서 모든 배송료를 미리 지급하고 배달 날짜로부터 1 년 이내에 공급자에게 환송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검증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내에

그러한 제품이 재료나 가공에 있어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급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제품을 보수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여

배송료를 미리 지불하여 매수인에게 제품을 송부하여야 한다.

11.4공급자는 그러한 제품을 보수하거나 교체하는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 받는다. 그러한 제품의 보수나 교체는 보증의 기간을 연장시키지 아니한다. 이 보증의 기한은 1 년으로 제한되며, 이 기간은 오류라고 주장되는 하자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이었거나 배달의 시점에 이미 잠재되어 있었다고 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11.5서비스 중 제 11 조 2 항에 부합하지 않고 매수인이 그러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그리고 서비스의 제공이 있는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통보한 경우에 공급자가 그러한 서비스가 위 규정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해당 서비스는 공급자가 11 조 2 항에 부합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에 합리적으로 다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 지체 없이 다시 제공되어야 한다. 만일 공급자가 서비스의 불완전한 이행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문제의 서비스에 관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

11.6다음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제공된 제품에 대한 보증의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i) 매수인이 제 11 조 3 항에 의하여 요구되는 통지를 한 이후에 그러한 제품을 계속하여 사용한 경우; (ii) 하자나 고장 등이 매수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일 때; (iii) 하자가 매수인이 제공하는 제도, 설계 또는 가공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매수인이 제공한 재료 또는 다른 재산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타 공급자가 완전히 제작한 부품이나 품목이 아닌 다른 물질로부터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iv) 하자가 제작 이외의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이 때 그 사정이 사고, 오용,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용, 관리 태만, 개조, 부적절한 설치, 부적절한 조정, 부적절한 수리, 부적절한 시험 등인지는 묻지 않는다; (v) 하자가 제품을 공급자가 미리 예상하지 아니한 다른 제품이나 물질과 같이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 (vi) 하자나 고장 등이 매수인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허가되지 않은 첨가나 수정을 가하거나,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하여 공급자가 서면으로 제공한 설명에 따르지 않아서 발생한 것일 때; 그리고 (vii) 하자나 고장 등이 매수인이 그에게 본 계약서에 따라 부과되는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였을 때.

11.7매수인이 계약이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지불하여야 할 어떠한 금액의 어떠한 비율이라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절의 규정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보증과 구제 방법 등은 공급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료될 수 있다.

11.8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은 독점적이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모든 명시적, 묵시적인 보증, 조건과 규정을 대신하는 것이며, 이에는 특정 목적을 위한 제품의 품질보증 또는 적합성 보증이 모두 포함된다. 본 절(제 11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의 위반으로 인하여 공급자가 지는 유일한 책임과 매수인에게

허용되는 유일한 구제 방법은 제 11 조 3 항과 제 11 조 5 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뿐이다.

12. 책임:

12.1 (i) 사기, (ii) 공급자의 과실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 (iii) 공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또는 (iv) 법적인 이유로서 제한되거나 면제될 수 없는 다른 모든 책임에 관하여서는 본 계약 조건의 어떠한 내용도 공급자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12.2공급자는 그의 과실로 인한 사건 또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매수인의 물질적 재산에 대하여 입힌 손해에 관해서는 매수인에게 금 오억 원 까지 책임을 진다. 조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훼손, 손실 또는 손상은 물질적 재산에 대한 손해가 아니다.

12.3제 12 조 1 항과 2 항에 따라, 제품에 관하여는 공급자가 계약에 따라 행한 제품의 제공, 불완전한 제공, 또는 제공 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공급자의 총책임은 그것이 계약의 위반에 관한 것이든, 불법행위(과실 포함)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든, 또는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이든 간에 해당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지불하여야 할 총 금액의 125%를 넘지 못 한다.

12.4제 12 조 1 항과 2 항에 따라, 서비스에 관하여는 공급자가 계약에 따라 행한 서비스의 제공, 불완전한 제공, 또는 제공 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공급자의 총책임은 그것이 계약의 위반에 관한 것이든, 불법행위(과실 포함)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든, 또는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이든 간에 해당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지불하여야 할 총 금액의 125%를 넘지 못 하며, 1 년 이상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해서는 어떠한 한 해에도 그 해에 매수인이 서비스의 대가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의 125%를 넘지 못 한다.

12.5제 12 조 1 항에 따라, 공급자는 그것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던지 간에 매수인에 대하여 이득의 손실, 수입의 손실, 사용의 손실, 영업량의 손실, 세입의 손, 신용의 손실 또는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발생한 간접적이거나 대가적인 손해에 관하여는, 그 손해가 예측 가능하였는지 여부, 당사자가 예상하였는지 여부, 불법행위(과실 포함)로 발생하였는지 계약 위반으로 발생하였는지, 다른 사정으로 발생하였는지를 불문하고 공급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12.6계약에 의하여,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권은 그 원인이 되는 (i) 제품이 배달된 날 또는 (ii) 서비스가 제공된 날로부터 3 년 이내에 공급자에 대하여 행사되어야 하며, 공급자는 이 기한 이후에 행사된 청구권에 대해, 또는 그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3. 소프트웨어:

공급자는 제품과 함께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소프트웨어, 펌웨어, 프로그래밍 루틴, 그러한 소프트웨어에 관한 문서, 그리고 매수인이 제작한 모든 복제품(이를 전부 포함하여 '소프트웨어라

칭한다')에 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항상 보유하며, 매수인에게 그러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만을 목적으로 하는 배타적이지 않고 양도 불가능한 권한을 부여한다.

14. 지적재산권:

14.1 어떠한 제품의 인도 또는 소유권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조건이나 다른 어떠한 계약의 조항도 매수인에게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양도, 이전 또는 부여하는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며, 이에 관하여서는 본 계약 조건의 제 13 조와 제 14 조

3 항이 적용된다.

14.2 매수인은 공급자가 서비스를 이행하는 과정(이를 '작업' 이라 한다)에서 제작, 생산, 또는 개발된 모든 제작품과 인도 가능한 실제적인 물건에 관한 소유권, 저작권, 그리고 지적 재산권은 세계 어디에서도 제작이나 이행과 동시에 공급자에게 귀속하고 공급자가 계속 독점적으로 보유, 행사할 것이며, 이러한 권리는 서비스, 문서, 자료, 그림, 설계서, 물건, 스케치, 보고서, 발명품, 개량, 수정, 발견, 도구, 스크립트 다른 모든 관련된 물품에 관한 권리와 이해관계가 포함된다. 매수인은 본 계약 조건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외에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 소유권, 또는 이해관계를 가지지 못 한다.

14.3 공급자는 매수인이 서비스의 목적인 이득을 사용하고 획득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매수인이 그러한 '작업' 을 필요한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이지 않고, 양도 불가능한 권한을 매수인에게 부여한다.

14.4 만일 매수인에 대하여 제품이나 서비스가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제 3 자의 특허, 저작권 또는 다른 권리를 해한다는 소송이 제기되면, 공급자는 매수인이 그 청구에 의하여 배상하게 되거나, 그 소송에 관하여 합의를 하기 위하여 지불하였거나 지불하기로 약속한 모든 손해와 비용을 배상한다. 이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전제 조건이 된다: (i) 그러한 소송과 관련된 모든 절차와 협상을 공급자가 완전히 지배한다; (ii) 매수인이 그러한 절차나 협상에 필요한 도움을 성실하게 제공한다; (iii) 확정적인 배상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면 매수인은 그러한 배상의 청구를 받아들이거나 배상을 하여서는 안 되고, 공급자의 승낙 없이는 그러한 절차를 종료 시켜서는 안 된다; (iv) 매수인은 문제되는 권리의 침해 등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보험이나 담보 등을 훼손시킬 일을 하여서는 안 되고, 그러한 보험이나 담보를 통하여 회복할 수 있는 금액을 회복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그러한 보험이나 담보를 등을 통하여 매수인이 회복한 금액에 대하여는 본 조항에 따른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v) 문제되는 소송에 관하여 다른 당사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거나

매수인의 동의에 의하여(매수인은 이러한 동의를 유보하여서는 안 된다) 매수인에게 배상을 하기로 합의된 손해나 비용의 배상은 공급자에게 귀속하고 매수인은 이를 공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vi) 공급자는 매수인에게 본 조항인 제 14 조 4 항에 의하여 공급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 비용 또는 지출을 최소화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공급자의 선택에 따라) 타인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대체적인, 또는 개량된 제품을 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을 것이 포함될 수 있다.

14.5 다음의 사정으로부터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제 14 조 4 항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i)

문제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공급자가 직접 행하였거나 서면으로 허락하지 않은 첨가나 수정이 이루어진 사정; (ii) 모든 명세

또는 설명서 등을 포함하여 매수인이 공급자에게 제공한 정보; (iii) 공급자가 제품에 필요한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거나, 매수인의 요구나 설명 등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 사정; (iv) 공급자가 제작하거나 개발하지 않은 장비와의 결합 또는 그러한 장비에의 추가; 또는 (v) 공급자가 미리 설정한 범위나 서면으로 승인한 범위를 넘어선 제품의 사용.

14.6 본 조항, 제 14 조는 제 12 조 1 항을 배척하지 않으면서, 어떠한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 3 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관한 공급자의 책임의 전체와 매수인의 유일한 구제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제 14 조도 제 12 조 3 항, 제 12 조 4 항, 그리고 제 12 조 5 항에 규정된 책임의 한계의 적용을 받는다.

15. 불가항력:

본 계약 조건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공급자는 그의 지배 하에 있지 않은 이유나 사정으로 인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의 제공이 방지, 지연 또는 그 경제적인 가치가 떨어진 것으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만일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사정이나 사건으로 인하여 공급자가 모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고를 확보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그의 독자적인 재량권의 행사로서 남은 재고를 그의 고객들 사이에 임의로 분배할 수 있다.

16. 기밀정보:

양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 대하여 알게 된 기밀 정보가 공개적인 지식이 되거나(본 조항의 위반 외의 원인으로) 권한 있는 기관의 명령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한 기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지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타방 당사자의 승낙 없이 그러한 정보를 제 3 자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17. 취소, 연기와 계약의 종료:

17.1공급자가 수락한 제품 주문은 공급자가 서면으로 동의(공급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한 경우에만 매수인이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취소되거나 수정된 주문에 관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과 근로에 관하여 공급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하고, 그러한 주문의 취소나 연기로 인하여 공급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 손해 비용, 요금 또는 지출을 배상하여야 한다.

17.2서비스에 관한 계약은 관련 제안서에 명시된 시작 날짜에 시작되어야 하고, 제 17 조 3 항과 제 17 조 4 항에 따라 조기 종료되지 않는 이상은 동 제안서에 처음 명시된 기간 동안 유지되고, 갱신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어느 한 당사자가 제 17 조 3 항이나 제 17 조 4 항에 따라 계약을 종료 시키기 전까지는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 유지된다.

17.3양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90 일 전에 종료의 통지를 함으로서 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고, 이는 제 17 조 4 항의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7.4서비스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수정이 불가능할 정도의 계약 위반을 저지르거나, 수정을 요구하는 통지를 서면으로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계약 위반을 수정하지 아니하면 타방 당사자는 계약 위반을 범한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고 즉시 서비스 계약을 종료 시킬 수 있다.

17.5서비스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각 당사자는 본 계약 조건에 따라 허락되거나 본 계약 조건에 따른 권리나 의무를 행사하기 위하여 그러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상대방의 재산 또는 그에 대한 점유나 지배를 상대방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이러한 재산의 사본을 보유하여서는 안 된다.

17.6본 조건들에 의한 계약의 종료는 종료 날짜에 이미 양 당사자에게 발생하고 있는 권리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8. 매수인의 지불불능:

만일: (i) 매수인이 지불불능의 상태가 되거나, 그의 자산에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임명된 재산 관리인, administrative 재산 관리인, 또는 관재인이 있거나, 그의 채권자들과 타협이나 합의를 하던가, 채무의 결과로서 그런 유사한 행위를 하거나, 그의 해산이나 청산을 명하는 명령이 발해지거나(지불 능력을 갖추기 위한 합병이나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청산/해산은 제외), 적용 가능한 다른 외국 법률에 따른 유사한 행위나 절차를 진행하였을 때 또는 (ii) 매수인이 영업을 중지하거나 중지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계약을 해제된 것으로 취급하고 매수인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는 일이 없이 더 이상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제공되었지만 결제되지 않은 서비스나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불 금액이나 요금은 이전에 이루어진 합의나 협정에 다른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변제기에 있게 되어 청구 가능해진다. 본 규정에 의한 권리의 행사는 본 계약 조건에 의하여 공급자에게 발생한 다른 어떤 권리나 구제 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9. 기타:

19.1본 계약 조건과 다른 모든 계약은 한국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본 계약 조건과 다른 모든 계약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일어나는 모든 분쟁과 청구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중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재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절차를 시작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전달함으로써 시작된다(‘시작통지’). 중재가 시작되면 양 당사자는 성실하게 중재에 임한다. 당사자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중재인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 조건이나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먼저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하고 중재 절차가 종료되거나 한 당사자가 중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만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본 계약 조건이나 다른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이나 청구의 해결을 대한민국 법원의 배타적인 관할에 맡기기로 동의하고 이러한 동의는 취소할 수 없으나, 공급자는 매수인에 대한 소송을 관할권 있는 법원 어디에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본 19 조 1 항에 규정된 어떠한 내용도 각 당사자가 예비적인 금지명령을 받거나, 기타 다른 자정적인 법적 구제를 받을 것만을 목적으로 법원에 의뢰를 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19.2공급자가 본 계약 조건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거나 집행하지 않는 것을 그러한 권한의 포기라고 보아서는 아니 되며, 이후에 이러한 권리의 행사나 집행을 금하지 않는다.

19.3만일 본 계약 조건의 조항이나 조항의 일부가 관할 있는 법원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집행 불능이라고 판단되면 그러한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의 결정이 다른 조항의 효력이나 집행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9.4매수인은 사전에 서면으로 공급자가 승낙을 하지 않으면 본 계약 조건에 따른 그의 권리를 양도, 이전, 갱신 또는 다른 방법으로 처분하거나 본 계약 조건에 따른 그의 의무를 다른 이로부터 하여금 대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19.5본 계약 조건과 관련 계약이 해당 사안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와 이해의 전부를 구성하며, 그 이전에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 이해 또는 협의를 대신하며, 이 때 그러한 합의, 이해 또는 협의가 구두로 이루어졌는지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이를 묻지 않는다. 해당 계약에 그러한 사실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이전에 하였던 말이나 쓰여진 글로부터는 어떠한 의사표시, 약속 또는 보증을 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공급자가 행한 거짓된 진술을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관해서는 매수인에게는 아무런 구제 방법도 인정되지 않으며(그러한 진술이 사기 행위로서 이루어졌거나 공급자가 그의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같은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루어진 경우는 예외),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구제 방법은 본 계약 조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 위반에 대한 것 뿐이다.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제 12 조의 적용을 받는다.

19.6 계약에 대한 수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19.7 본 계약 조건에 따라 발송되는 모든 통지는 견적에 나타나 있는 각 당사자의 주소나 통지의 수령을 받는 당사자가 그러한 통지로서 때때로 지정할 수 있는 주소로 발송되어야 한다.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졌으면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직접 전해졌으면 전달 시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면 발송 후 2 일 뒤에, 팩스로 보낸 경우에는 전송 확인 시에 효과를 발하는 것으로 본다.

BKSV October 2016